

학 칙

전문제정:2006.03.21	개정:2007.04.11	개정:2008.06.10	개정:2008.09.26	개정:2009.02.01	개정:2010.02.01
개정:2011.01.01	개정:2011.02.01	개정:2011.03.01	개정:2011.04.29	개정:2012.03.01	개정:2012.06.18
개정:2013.04.19	개정:2014.03.17	개정:2014.09.01	개정:2015.04.01	개정:2015.11.11	개정:2016.05.01
개정:2016.11.07	개정:2017.02.21	개정:2017.05.01	개정:2018.05.21	개정:2018.09.01	개정:2019.02.15
개정:2019.03.25	개정:2019.04.29	개정:2019.08.01	개정:2020.01.13	개정:2020.04.20	개정:2020.08.31
개정:2021.01.19	개정:2021.04.27	개정:2021.09.28	개정:2022.02.01	개정:2022.05.02	개정:2022.07.06
개정:2022.08.22	개정:2023.03.17	개정:2023.04.24	개정:2023.07.25	개정:2024.04.01	개정:2024.07.31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및 교육목표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세한대학교(이하“이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조직과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4.29.>

제2조(교육목표) 이 대학교는 진리탐구·덕성함양·기술계발의 건학정신으로 창의성교육, 인성교육, 주도성 교육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다.<개정2020.01.13.>

제2절 학부·대학원·교육·연구지원 시설 및 부속시설

제3조(직제) 이 대학교의 직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학부대학원) ① 이 대학교에 대학,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과 대학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24.04.01.>

② 이 대학교에 영암캠퍼스와 당진캠퍼스를 두며, 영암캠퍼스는 영암군에, 당진캠퍼스는 당진시에 둔다.<신설2013.04.19.>
<개정2015.04.01., 2024.04.01.>

③ 이 대학교의 학과등에 별표1-1과 같이 대학·학과·전공(이하“학과”라 한다)을 둔다.<개정2017.02.21., 2019.04.29., 2021.09.28., 2024.04.01.>

④ 이 대학교에 일반대학원을 둔다.<개정2014.03.17.>,<항 변경 2024.04.01.>

⑤ 이 대학교 일반대학원에 별표2-1과 같이 학과 또는 전공(이하“학과”라 한다)을 둔다.<개정2014.03.17., 2021.09.28., 2024.04.01.>

제5조(교육연구 지원시설) ① 이 대학교에 두는 교육연구 지원 시설의 명칭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1.01.01.,2012.03.01., 2019.04.29>

② <삭제 2019.04.29.>

제7조(산학협력단의 설치) ① 이 대학교에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학교법인 영신학원 정관」 제101조에 따라 영암캠퍼스에는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두고, 당진캠퍼스에는 세한대학교 당진산학협력단을 둔다.<개정2010.02.01., 2011.01.01.,2024.07.31.>

② 산학협력단은 총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이 대학교산하 특수법인으로 한다.<개정2010.02.01, 2011.01.01>

③ 각 산학협력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11.01.01.>(개정2024.07.31.)

제8조(학교기업의 설치) ① 이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개정2010.02.01.,2011.01.01.,,표개정2013.04.19.,2015.11.11.,2020.08.31>

명 칭	관련학부(과)	사업 종목	설치 장소
요트클럽1897 (Yacht Club1897)	스포츠레저산업학과(해양레저학과(개정 2020.08.31.))	해양레저장비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건조업,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전남 목포시 삼학로 8-56

② 학교기업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교기업은 관련학부(과)와 연계하여 직접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판매 및 용역의 제공 등을 사업내용 으로 한다.<개정2010.02.01>

제8조의2(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총24학점 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1개학기당 인정학점은 6학점이내로 한다.<조신설2010.02.01><개정2011.01.01>

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 학점인정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관한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의3(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 ① 학교기업 운영 및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의 2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조신설2010.02.01>

②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③ 교직원, 학교기업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제공한 경우와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각 연구소) ① 영암캠퍼스와 당진캠퍼스에 설치된 각각의 산학협력단에는 전략특성화사업을 수행할 연구원과 각 분야별 학술 연구소를 둘 수 있다.<개정2011.01.01.,개정2024.07.31.>

② 각 연구원 및 연구소에 관한 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교원의 소속 및 학과(전공) 폐지 및 폐과, 교수시간

제10조(전임교원의 소속) ① 이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계열, 학부(과) 또는 전공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에 따라 연구소, 산학협력단 등에 소속시킬 수 있다.<개정2012.03.01>

②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임교원의 소속을 변경하거나 겸직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의2(교원의 재계약·재임용) 이 대학교 교원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계약 및 재임용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0.02.01. 2011.03.01.,2019.04.29.,2019.08.01>

제10조의3(학과(전공)폐지 및 폐과) ① 모집단위별 충원율이 대학 전체 재학생 충원율에 미달하거나, 학과평가 결과 하위 20%이내에 속할 경우 학과(전공)의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조개정2010.02.01.><개정2014.03.17., 2015.04.01.>

② 모집단위의 폐지가 결정되어 모집단위 편제정원이 전 학년 0명이 될 때 폐과된 것으로 본다.<개정2015.04.01.>

③ 임용권자는 폐지 및 폐과된 학과(전공) 소속교원에 대해서 임용형태, 업적평가 결과, 직무수행능력, 인화 및 대학발전 기여가능성,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2014.03.17><항변경2015.04.01.>

④ 학과(전공)폐지 및 폐과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2014.03.17><항변경2015.04.01.>

제10조의4(비정년계열 교원) 이 대학교의 비정년계열 계약직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2011.03.01.><개정2012.03.01.>

제10조의5(강사) ① 이 대학교에 강사를 둘 수 있으며, 강사는 담당교과목의 교육·지도를 담당한다.

② 강사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특수신분교원) ① 이 대학교에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석좌교수, 강의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특임교수, 객원교수 등을 임용할 수 있다.<개정2012.03.01.,2019.08.01.,2022.02.01>

② 특수신분교원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교원의 교수시간) ①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매주 1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 폐지 및 직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개정2012.03.01.,2019.02.15.,2024.04.01.>

②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계약에 의한 시간으로 하며 직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신설 2019.02.15.><개정 2024.04.01.>

③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1.03.01.><항변경 2019.02.15.>

제12조의2(교원의 임무) ①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신설2011.03.01>

②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12.03.01.>

제4절 교수회, 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개정2010.02.01.>

제13조(교수회) ① 이 대학교의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개정2012.03.01.,2015.04.01.>

② 교수회는 총장 및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2015.04.01.>

③ 교수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개정2015.04.01.>

④ 교수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입학·수료·진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
3. 교과목의 설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시험에 관한 사항
6.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

⑤ 제4항의 각 학과와 관련된 주요사항은 해당학과 전임교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신설2015.04.01.>

제14조(교무위원회) ① 이 대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혁신성과관리원장, 각 처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2019.04.29.,2020.01.13.,2022.02.01>

③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전공) 및 부속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입학에 관한 사항
4. 학과(전공)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교수회의 안건 중 중요사항
6. 교수 연구에 관한 사항
7.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명예학위 포함)에 관한 사항
2.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4.04.01.>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 대학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의2(대학평의원회) ① 이 대학교에 대학평의원회를 두며, 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조신설2010.02.01><개정2011.01.01>

② 기타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의3(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이 대학교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에 따라 특별지원 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사항은 따로 정한다.<조신설2011.01.01.><개정2019.04.29>

제15조의4(등록금심의위원회) ① 이 대학교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조신설2011.02.01.><개정2012.03.01>

② 항삭제<2020.08.31.>

③ 항삭제<2020.08.31.>

④ 학생위원은 사무학생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개정2015.04.01., 2019.04.29., 2022.05.02>

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⑥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각종 위원회) 이 대학교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9.04.29>

② 삭제<2019.04.29.>

제2장 대학 . 대학원 . 학사일반

제1절 학위과정 및 학생정원

제17조(학위과정) ① 이 대학교의 각 대학 및 각 학부(과)에 학사학위과정을 둔다.<개정2014.03.17.,2019.08.01., 2023.04.24.><항분리 2024.04.01.>

②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협동과정을 둔다.<항분리 2024.04.01.>

③ 제2항 이외에 학사 학위과정과 석사 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는 연계과정(이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4.04.01.>

④ 필요한 경우 일반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부설할 수 있다.<항분리 2024.04.01.>

⑤ 학사 및 석사 학위과정에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에 따른 온라인 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격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2024.04.01.>

제18조(학생정원) ① 이 대학교의 학(부)과 등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2013.04.19>

② 일반대학원의 입학정원은<별표2>와 같이 총 정원제로 하며, 학과별 입학정원은 총정원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3.04.19., 2019.04.29>

③ 삭제<2014.03.17>

제19조(별도정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2015.11.11.>

1. 대학 : 위탁학생,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사학위인정자로 제3학년에 편입자,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외국인·귀화인, 의료인력 및 유치원교사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기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학생<개정2015.11.11.>
2. 일반대학원 : 위탁학생,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학과 간 협동과정 학생, 학연·산협동과정 학생, 기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특별교육과정 학생<개정2013.04.19.,2014.03.17., 2015.11.11.>

제19조의2(외국인 학생) ① 삭제 <조개정2010.02.01.>,삭제<2015.11.11.>

② 삭제<2015.11.11.>

③ 입학이 허가된 자 중 한국어 이해능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일정기간 한국어 교육의 이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학생의 신분은 재학생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

④ 제19조에 해당하는 외국인 학생에게는 따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학칙을 준용한다.<2019.04.29.>

제19조의3(학위수여) ① 제19조 제2호의 학생이 각 학과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64조 제1항 각호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2010.02.01., 2019.04.29>

② 외국인 특별생에게는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서를 수여 할 수 있다.

제20조(계약학과 등) ① 이 대학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와 산업교육특별과정 등(이하“계약학과 등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의 정원, 운영경비, 학생의 수업료, 학기 및 수업 일수, 설치·운영 기간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 입학 · 등록 및 납입금

제21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22조(학생의 선발) ① 학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9.04.29>

② 삭제<2019.04.29.>

제23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4.04.01>

②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개정 2024.04.01>

제24조(등록)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개정2019.04.29., 2021. 1.19>

② 삭제<2011.01.01>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논문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격, 신청기간, 등록금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9.04.29>

④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금 납부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3.04.19>

⑤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업연한 초과자중 수강과목이 없는

학생은 예외로 한다. 다만 유학생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2013.04.19.,2019.04.29., 2021. 1.19>

- ⑥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학기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2011.01.01>
- ⑦ 등록금의 반환, 등록금의 면제 및 감액, 수업연한을 초과하고 등록한 자의 등록금 감액 기준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을 따른다.<개정2011.01.01.,2014.03.17., 2019.04.29>
- ⑧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또는 정학 및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제3절 휴학 · 복학 · 자퇴 · 제적 및 재입학

제25조(휴학)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에 휴학할 수 있으며, 총장은 감염병 등으로 학생의 등교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휴학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2011.01.01., 2020.03.01.>

- ②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1개월 이상 수학이 불가능한 자는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개정2015.04.01., 2019. 04.29>
- ③ 휴학은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하되 통산하여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개정2011.01.01.,2012.03.01., 2013.04.19., 2019.04.29>
- ④ 군입대 휴학자의 의무복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2013.04.19>

제26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소정기간 내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 수행으로 휴학한 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복학하여야 한다.<개정2013.04.19., 2019.04.29>

- ② 학생이 제25조 제1항에 의거 권고휴학 중인 경우 휴학권고 상황에 따라 휴학 종료일자 전에 학생에게 복학을 권고할 수 있으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2020.03.01.>
- ③ 복학은 매학기 개강 전 소정의 기간부터 개강 후 수업일수1/4선 이전에 한하여 허가한다.<개정2013.04.19.>
- ④ 휴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수학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은 복학을 유예시킬 수 있다.<신설 2024.04.01.>

제27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2013.04.19., 2019.04.29>

제28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 1.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2.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납입금 납부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개정2021. 1. 19, 2024.04.01.>
- 3. 학사경고를 연속 3회 (평균 평점이 1.0 미만인 경우 2회) 또는 통산 5회 이상을 받은 자 중 지도교수의 지도가 불가능한자.
- 4. 대학원을 제외한 이중학적 보유자<개정2013.04.19>
- 5. 소정의 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개정2024.04.01.>
- 6. 본인 사망자<신설2011.01.01.>
- 7. 학생상벌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신설2024.04.01.>
- 8. 질병 기타 사유로 수학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신설2024.04.01.>

제29조(재입학) ①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재입학은 교무입학처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04.01., 2019. 04.29>
- ③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개정2019.04.29>
- ④ 삭제<2011.01.01.>

제4절 학년도 · 학기 ·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30조(학년도 ·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②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다만 제1학기 및 제2학기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학기

개시일 전후를 지정하여 다르게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학사일정으로 정한다.<개정2020.01.13. 2021.01.19>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3. 계절학기 :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에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3학기 이상의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자율형학기제를 운영 할 수 있다.<개정2020.01.13.. 2021.1.19., 2022.07.06.>
- ④ 학생의 현장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9조의 현장실습 수업 등과 별도로 현장실습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항 신설2022.07.06.>
- ⑤ 신입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입문학기를, 재학생들의 산업체 현장교육과 교외교육의 집중수업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집중학기 등의 특별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항 신설2022.07.06.>
-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학기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항 신설2022.07.06.>

제31조(수업일수) ① 수업 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한다.<신설 2020.03.01.>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 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개정2019.03.25., 2020.03.01.>
- ③ 총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2011.01.01., 2020.03.01.>
-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하되, 제34조제1항에 따른 학점 당 이수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0.03.01.>
- ⑤ 제4항에 따라 교과별 수업일수를 학교의 수업일수와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학과장은 교육과정 특성 및 적정 수업일수를 고려하여 매 학기 소정기일까지 수업(편성)계획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학원의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03.01. 개정 2021. 04.27>

제32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국정공휴일로 한다.<개정2014.03.17>

- ② 하계방학, 동계방학 기간은 따로 정한다.
- ③ 입학전형, 졸업식 등 기타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④ 비상재해 또는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개정2011.01.01.>

제5절 교육과정 · 이수단위 · 수강신청 및 성적

제33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의2(비교과과정) ① 총장은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진로설계, 독서활동, 봉사활동 등과 같이 전인적 교육을 위한 제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2019.04.29>

- ② 제1항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19. 04.29>

제34조(이수단위) ①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교과의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2.03.01>

- ② 삭제<2019.04.29.>

제35조(강의시간표 및 수강신청) ① 매 학기 강의시간표는 개강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2013.04.19., 2019.04.29>

- ② 학생은 매학기 강의시간표에 따라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3.04.19., 2019.04.29>

제36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시험, 과제물, 출석상황 등을 참작하여 상대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비율과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각 과목별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학부의 경우 D급 이상은 급제, F급 이하는 낙제로 하고, 대학원의 경우 C급 이상을 급제로 한다. 다만,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급락만 구분하여 급제는“P”로 낙제는“F”로 표시하며,

평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표개정2013.04.19.>

등 급	A+	A	B+	B	C+	C	D+	D	F
평 점	4.5	4.0	3.5	3.0	2.5	2.0	1.5	1.0	-

제6절 수업, 공개강좌, 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 은행제 등

제37조(수업) ① 학생의 수업은 주간수업·야간수업·주말수업·계절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현장실습 수업, 집중수업, 학교 밖 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개정2014.03.17., 2019. 04.29., 2020.08.31., 2024.04.01.>

② 계절수업은 동·하계휴가 중에 실시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19.04.29>

③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20.08.31.>

④ 집중수업은 교육과정별로 집중이수 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19.04.29.>
<개정2020.08.31.>

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방법, 학사관리, 교육시설 등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4.04.01.>

제37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총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이 해당 기간 동안 해당 교과목의 학업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한다.<신설 2024.04.01.>

1. 담당 교원으로 하여금 해당 수업에 결석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담당 교원으로 하여금 해당 수업과 관련된 자료 제공 또는 수업 보충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담당 교원으로 하여금 이를 이유로 성적 처리 등 학업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 ① 조항삭제<2014.03.17>

② 항삭제<2014.03.17>

제39조(현장실습수업 등) ① 학생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기 또는 방학 중 기관 및 업체 등에서 현장학습(실습), 체험활동, 사회봉사활동, 어학연수, 공인어학성적, 및 취득자격증 등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2011.01.01,2013.04.19>

② 현장학습(실습)수업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① 교육과정 외에 교육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의 습득을 필요로 하는 자 및 일반인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증서를 수여한다.

③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시간제 등록생) ①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이하“시간제 등록생”이라 한다) 즉, 시간제 등록생은 정규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과 시간제 등록 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 생으로 분리하여 선발 할 수 있다.

②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인원은 모집단위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개정2024.04.01.>

③ 시간제 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24학점 및 연간 42학점(계절학기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04.01.>

④ 시간제 등록생의 모집단위별 등록인원, 등록자격, 선발방법, 교육과정, 학점인정, 학력인정, 학위 수여 및 납입금의 책정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학점은행제) ①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하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점은행제에 있어 학점의 인정범위 및 학위종별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총장이 따로 정한 바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43조(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① 국내대학이나 외국 대학과 공동으로 학사학위 과정 또는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상호 협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01.01., 2024.04.01.>

②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을 상호 협약을 통해 운영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4.04.0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4.04.01.>

제44조(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 삭제 <개정 2024.04.01.>

제44조의2 삭제 <신설 2019.04.29.,2019.08.01>

제3장 대학 학사운영

제1절 입학 · 편입학 및 전부 · 전과

제45조(지원 자격) 입학전형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3.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46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일반편입학과 학사편입학으로 구분하며 그 허가는 소정의 전형 절차에 의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② 일반편입학은 여석 산정 기준에 의한 범위 내에서, 학사편입학은 당해 학년 입학 정원의 5% 이내와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10% 이내에서 정원외로 허가 할 수 있다.<개정2015.11.11.>

③ 일반편입학의 지원 자격은 직전학년과정 학점이수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고, 학사편입학자의 지원 자격은 학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④ 기타 편입학의 시행 시기와 허용범위, 절차, 선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전(부)과) ① 전(부)과는 『고등교육법』이 정한 해당학과 등의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학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용 할 수 있다.<개정2011.01.01. 2016.11.07., 2024.04.01.>

② 전(부)과의 시행 시기와 허용범위, 절차, 선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소속변경) ① 소속변경은 소속 학과(부)의 폐과 및 명칭 변경 또는 소속변경 희망 학과(부)과의 여건을 감안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2019.04.29>

② 소속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 교과목 및 학점

제49조(교과목 구분) ① 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필수와 선택의 구분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따로 구분한다.

② 교육학부 소속 학과에 교직과목을 둔다.<개정2019. 04.29>

제50조(학생의 전공이수) ① 학생은 모집단위 의 주 전공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공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승인받아 이수할 수 있다.<개정2011.01.01.,2019.04.29.,2020.01.13.>

1. 복수(2이상의) 전공
2. 2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가 제공하는 부전공
3. 2 이상의 학과가 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개정2019.04.29.>
4. 이 대학교에 개설된 교육과정 중에서 학생이 구성하여 이수하는 학생설계전공<신설2020.03.01.>
5. 다양한 전공분야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전공과정<신설2023.07.25.>

② 제1항 각 호의 대상학과, 이수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9.04.29.,2020.01.13.>

제50조의2(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의 의무이수) ①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학년도 이후 신입학생은 주 전공 이외에 1개 이상의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 제1항 제1호내지 제5호 중 어느 하나라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본 조의 의무이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01.13.><개정 2023.07.25.>

②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의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0.01.13.>

제50조의3(마이크로디그리) ① 지역발전 선도의 스마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최소단위의 단기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2022.07.06.><개정 2024.04.01.>

②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의 편성 절차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22.07.06.>

제50조의4(소단위 전공과정) ① 신산업·신기술·지역수요분야 등 학생이 적은 학점으로 다양한 전공분야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07.25.>

② 소단위 전공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3.07.25.>

제51조(이수학점) ① 교양과목의 이수학점은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12.03.01.,2014.03.17.,2015.04.01., 2019.04.29>

② 삭제<2012.03.01>

③ 삭제<2012.03.01>

④ 삭제<2012.03.01>

⑤ 삭제<2012.03.01>

⑥ 전공과목의 이수학점은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12.03.01., 2019.04.29>

제52조(학기당 수강학점) ①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은 15학점내지 18학점(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18학점 내지 21학점)까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자율형학기제 모듈형 학기제의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1.01.01., 2012.03.01., 2014.03.17., 2019.03.25., 2021. 1.19>

② 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 타 대학 및 원격 강좌 학점 교류자, 총장이 승인하는 과정 이수자는 제1항의 학점 외에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고, 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75미만인 자는 제1항의 학점에서 3학점을 감하여 수강토록 한다.<개정2019.04.29., 2020.01.13., 2024.04.01.>

제53조(학점인정 범위 및 기준 등) ① 학생이 국내외의 타 대학 및 교육기관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기준 범위내에서 이 대학교의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2011.01.01., 2015.04.01., 2022.05.02., 2024.04.01.>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 인정의 범위 이내에서 인정한다. 다만 이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2019.04.29., 2024.04.01.>

1. 다른 국내 대학이나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2.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한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단서 규정 및 제1호의 어느 하나와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인정 범위가 더 큰 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24.04.01.>

제53조의2(학습경험 학점인정제) ①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2022.05.02.>

② 삭제 <신설2020.03.01.><개정2022.05.02. 2023.04.24>

제53조의3(입학 전 취득학점 및 원격수업에 의한 취득학점)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범위 등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21.04.27.>

1. 입학 전에 이 대학교와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대학 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 2. 병역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중인 학생이 학기 당 6학점, 연 12학점 이내의 원격수업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
- 3.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원격수업 공개강좌(K-MOOC 등)를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 4. 외국인어학연수생이 입학 전 이 대학교 어학연수외의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입학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학점 인정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07.31.>

제54조(과정 간 취득학점) ① 학사학위과정 재학생으로서 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 교과목을 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개정2013.04.19>

② 제1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2019.04.29>

제55조(기타 취득학점) ① 재입학자의 이전 취득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② 편입학 또는 전(부)과한 자의 전적대학 또는 학과 등에서 이수한 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5조의2(학점인정 신청) 학생은 타 대학 및 원격강좌 학점교류 등 승인을 받은 수학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학점인정을 교무입학처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4.04.01.>

제3절 수업·재학연한, 시험, 성적경고 및 학위취득유예 신청<개정2019.04.29.>

제56조(수업연한 및 조기졸업) ①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학과의 수업연한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08.2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전 과정을 조기이수한 후 매학기 평점평균 4.00이상, 전 학년 평점 평균 4.25이상인 학생 또는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총장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졸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9.04.29. 2020.01.13>

제57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신설2015.04.01.>

제58조(시험) ① 시험은 매 학기 2회 이상 실시한다.

② 소정의 기간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추가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③ 시험의 시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9조(응시자격) 매 학기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그 과목의 시험 응시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허용할 수 있다.<개정2013.04.19., 2019.04.29>

제60조(학사경고) ① 매 학기말(계절학기 성적은 제외한다) 평점평균이 1.75미만인 자에 대하여 학사경고를 부과하고, 학적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8학기(편입생인 때에는 4학기) 이후 성적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개정2020.01.13., 2021.09.28.>

② 학사경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1조(학위취득유예 신청) 복수, 부전공, 교직과정 이수 및 기타사유로 학위취득유예를 희망 하는 자는 신청서를 당해 학기별로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2019.04.29.>

제4절 학년수료 및 졸업

제62조(학년수료) ①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는 학년 수료를 인정한다.

② 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표개정2013.04.19.,2014.03.17.,2015.04.01.>

구 분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졸업학점이 120학점인 학과	30학점 이상	60학점 이상	9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	32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98학점 이상	130학점 이상
졸업학점이 134학점인 학과	34학점 이상	66학점 이상	100학점 이상	134학점 이상
졸업학점이 144학점인 학과	36학점 이상	72학점 이상	108학점 이상	144학점 이상

제63조(졸업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2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 언어치료청각학과, 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수학교육과, 영어교육과, 기술교육과, 컴퓨터교육과는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2011.01.01., 2012.03.01., 2013.04.19., 2014.03.17. 2015.11.11.>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11.01.01>

제64조(졸업 및 학위수여) ① 졸업은 전기졸업과 후기졸업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위증을 수여한다. 다만,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소정학기 등록을 필한 자
3. 학과 등의 필요에 의하여 부과하는 졸업논문, 졸업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작품발표 또는 실기고사 등에 합격한 자
4. 졸업인증제에 따른 학부(과)별 인증기준에 통과한 자. 다만 졸업인증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수여학위의 종별은 <별표4-2>와 같다.<개정2010.02.01>

③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증에 부전공을 표시하고, 복수전공·융합전공·학생설계전공·소단위전공과정을 이수한자에게는 학위증에 해당 학위명을 표시한다.<신설 2012.03.01.><개정2019. 04.29, 2020.03.01., 2023.07.25.>

제64조의2(수여학위의 취소) 학사학위(교육과정공동운영에 따른 학위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해당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학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조신설2015.04.01.>

제5절 학생자치활동 및 지도

제65조(학생회 등) ①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이 대학교의 설립정신과 교육이념을 실행하기 위하여 세한대학교 학생회 및 그 밖의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2019.04.29>

② 학생회 및 그 밖의 학생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19.04.29>

제66조(회원자격 및 권리의무) 삭제<개정2019.04.29.>

제67조(임무 및 기능) 학생회의 임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9.03.25.>

1. 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학술, 예술 및 체육활동
2. 보건 및 기술봉사 등 각 분야의 봉사활동
3. 기타 학생자치활동

제68조 (활동 및 간행물) ① 학생은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주무부서에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2019.03.25.>

1. 교내외 5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시설물의 이용
3. 교내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4.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및 시상의뢰
5.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②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 및 교무입학처장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을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개정2015.04.01., 2019.04.29>

제69조(학생활동 제한) 학생 교육목적 및 대학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0조(학생지도) ① 학업 및 학생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학과(부)장은 매 학년도 초 학생에 대한 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고, 지도교수는 학생을 특별지도 해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협력하여야 한다.<항 신설2020. 1.19>

제71조(학생생활 교육위원회) ① 학생자치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생활 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생생활 교육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1조의2(집단활동) ①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 학생회 활동, 학과 행사, 대학전체 행사 등의 집단활동을 할 때에는 학생의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예방과 사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16.11.07.>
<개정2019.04.29>

② 집단활동을 주관하는 담당교수와 학생대표는 연대책임을 지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집단활동에 대한 운영중지·폐쇄·재정지원 중단·책임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2016.11.07.>

제6절 장학금·포상 및 징계

제72조(장학금) ① 입학시험성적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학비조달이 곤란한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및 북한 이탈주민과 그 자녀에게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납입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2019.03.25.>

③ 교외기관의 장학생 추천 또는 기부 장학금을 재원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발 및 추천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0.03.01.>

제73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제74조(징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상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1.01.01>

1. 학칙을 위반한 자

2.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다만, 퇴학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징계 시 해당 학생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대학원 학사운영

제1절 입학·편입학·수업 및 재학연한

제75조(지원 자격) ① 학위과정별 입학전형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은 국내·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박사학위과정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개정2019.04.29.>

②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지원학과(전공)는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개정2011.01.01>,<2014.03.17>

제76조(편입학) ①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편입학 하고자 하는자는 국내·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한자이어야 한다.<개정2014.03.17., 2015.11.11.>

② 일반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외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재학한 자이어야 한다.

제77조(전공변경) 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학과를 변경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8조 삭제<2011.03.01>

제79조(수업연한) ① 일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박사학위과정 3년 이상, 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은 각 각 6개월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2018.05.21., 2019.04.29., 2020.01.13.>

② 삭제<2014.03.17>

제80조 (재학연한) 일반대학원 재학연한은 석사과정의 경우 7년, 박사과정의 경우 10년, 통합과정의 경우 10년으로 정한다.<개정2014.03.17., 2015.11.11., 2019.04.29., 2023.03.01>

제2절 수료 및 학위수여

제81조(수료학점) ① 일반대학원 수료학점은 석사학위과정 24학점이상, 박사학위과정 36학점 이상, 통합과정 54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2019.04.29., 2019.08.01>

② 삭제<2014.03.17>

③ 제1항의 수료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9.08.01.>

제82조(선수과목이수) 필요에 따라 학(부)과 및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선수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이 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4.03.17., 2019.04.29>

제83조(학점인정) ① 재학 중 이 대학교의 대학원 또는 협정관계에 있는 타 대학교의 대학원 및 연구기관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각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학교와 공동학위 수여에 관하여 별도의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9.04.29.>

② 입학이전 국내·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당해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은 석사학위과정 6학점, 박사학위과정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 편입학자의 학점은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이 대학원의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에 한하여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까지, 박사학위과정은 15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다.

④ 재입학자의 이전 취득학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83조의2(학습경험 인정제) ① 제53조의2 규정에 의거 인정하는 학점은 석·박사학위 과정의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인정절차는 동 조항을 준용한다.<신설2022.05.02.>

제84조(과정 간 취득학점인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석사학위 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2011.01.01>

② 석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학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코자 하는 자는 한 학기에 3학점, 총 6학점까지 해당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강할 수 있다.

제85조(학점교환) ① 이 대학교의 대학원간 학점교환은 석사학위과정 6학점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이 대학원과 학점 교환제를 실시하는 타 대학교의 대학원의 교과목을 수강코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 (전공)주임교수의 승인과 양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86조(수강학점) 매 학기 수강학점은 일반대학원 9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은 교과목을 추가 개설할 수 있다.<개정2014.03.17>

제87조(학위논문 제출시한, 자격시험 및 심사) ① 학위논문 제출시한은 제80조의 재학연한으로 한다. 단, 재학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학위논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나, 수업료의 6분의 1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2014.03.17>

② 이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생으로서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대학원에서 정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2014.03.17>

③ 삭제<2014.03.17>

④ 학위 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하며 실시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9.04.29.>

제87조의2(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소정의 등록과 수업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신 학위 취득시험 또는 추가 학점 이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19.04.29.><개정2022.02.01.>

제88조(수료의 시기) 학위과정별 수료인정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89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① 이 대학원 학위의 종류는 별표4와 같다. 다만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1.01.01>

② 이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학위수여 결정을 받은 자에게 총장은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학위를 수여 한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 학위논문 제출 대신 학위취득시험 또는 추가 학점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2014.03.17., 2022.02.01>

③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지역사회발전 및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2019.04.29.>

제89조의2(박사학위 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그 학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표하지 않는다.<신설2019.04.29>

제90조(수여학위의 취소) 석사·박사학위(교육과정공동운영에 따른 학위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2015.04.01.>

제90조의2(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① 주임교수는 그 학과(전공)의 학사업무 및 학생지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신설2019.04.29>

② 대학원에 개별학생의 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지도교수는 지도학생의 이수과목 지도, 논문지도, 기타 수학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신설2019.04.29.>

제3절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91조(학생지도) 학생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업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91조의2(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① 주임교수는 그 학과(전공)의 학사업무 및 학생지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신설2019.04.29.>

② 대학원에 개별학생의 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지도교수는 지도학생의 이수과목 지도, 논문지도, 기타 수학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신설2019.04.29.>

제92조(장학금) ① 각 과정의 입학시험성적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학원생의 교외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72조 3항 규정을 따른다.<신설 2020.03.01.>

③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3조(징계) 이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 시 해당 학생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제5장 학칙개정

제94조(제안) 각 부서장은 학사운영상 학칙개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주무 부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95조(공고) ① 개정안을 제출받은 주무부서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2011.01.01., 2015.04.01.>

② 총장은 학칙개정안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정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법령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2013.04.19.>

제96조(의견제출) ① 각 부서장은 공고된 학칙개정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7조(심와 공포) 학칙개정안의 공고기간이 경과후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개정2011.01.01., 2015.04.01.>

제98조 삭제<2012.03.01>

제6장 자체평가<장신설2010.02.01.>

제99조(자체평가) ① 이 대학교는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조항신설2010.02.01.><개정2011.01.01.>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보칙<장신설2019.04.29.>

제100조(위임사항)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19.04.29.>

부칙

이 학칙은 공포일(2006.3.21)로부터 시행한다.

(학칙의 폐지) 이 학칙의 시행으로 종전의 세한대학교 학칙, 세한대학교 대학원 학칙은 폐지한다.

(경과조치) 전 조의 폐지 학칙중 이 학칙과 상이하여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 예는 이 학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다른 규정의 제정)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 학칙에 의해 제정된 제 규정은 이 학칙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변경 학칙은 2007.4.11일부터 시행하되, 2007.3.1일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별표1, 별표2, 별표3은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006학년도 이전에 관광학부(관광중국어전공, 관광영어전공, 국제한국어교육전공)에 입학자는 관광외국어학부(관광일본어전공, 관광영어전공)와 중국교류학부(국제한국어교육전공, 관광중국어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2006학년도 이전에 관광학부(관광경영전공, 부동산전공)에 입학한자는 관광경영학부(관광경영전공, 부동산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2006학년도 이전에 회화과에 입학한자는 조형문화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6월 10일부터 시행하되,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별표1, 별표2, 별표3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9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0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변경 학칙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학부(과)등 명칭은 인가받은 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하며, 학부(과)등 명칭이 변경되기 전 학부(과)에 재적 중인 자와 복학 또는 재입학 하는 자는 변경된 모집 단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일반대학원 학과 폐지(박사과정 : 전기전자공학과, 화학환경공학과, 석사과정 : 영어학과, 중국어학과, 경영 정보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건축공학과) 교육대학원 전공폐지(석사과정 : 컴퓨터교육, 과 학통합교육, 음악교육) 적용 : 2009학년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09년도에 실시한 자체평가는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및 본 학칙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부) 명칭변경, 분리, 신설, 통합 또는 전공 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학과(부) 명칭 변경, 분리, 신설, 통합 또는 전공 폐지 등에 불구하고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학과(부) 또는 전공에 재적 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학적변동자와 당해 입학년도에 한 학기라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청에 따라 변경된 학과(부) 또는 전공에 재적한 것으로 한다.

② 학부로 모집하여 전공이 배정되지 않은 학생은 종전 기준에 따라 전공을 배정한다.

제3조(장애학생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특별지원위원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보건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당시 보건대학원에 재적중인 학생은 수료 또는 졸업할 때까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제5조(학위종별)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자는 입학당시의 학위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동의하면 개정된 학위증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의 2011학년도 모집단위 및 학생정원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학점) 제63조 졸업학점중 기술교육과는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144학점으로 적용하고 안경광학과는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144학점으로 적용한다.

제3조(모집단위 신설, 폐지, 명칭변경 또는 학과(전공) 신설, 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①학과(부) 신설, 폐지, 명칭변경 또는 모집단위내의 학과(전공) 폐지, 신설 등에도 불구하고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학과(부) 또는 전공에 재적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학적변동자와 당해 입학년도에 한 학기라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청에 따라 변경된 학과(부) 또는 전공에 재적한 것으로 한다.

② 학부로 모집하여 전공이 배정되지 않은 학생은 종전 기준에 따라 전공을 배정한다.

③ <별표1>, <별표2>, <별표3>의 2012학년도 모집단위 및 학생정원은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이 개정학칙 시행 당시 육대학원, 경영행정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에 재적중인 학생은 수료 또는 졸업할 때까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변경으로 대학명칭을 “대불대학교”에서 “세한대학교”로 변경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제24조는 2013년3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는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모집단위 신설, 폐지, 분리, 명칭변경 또는 학과(전공) 신설, 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①학과(부) 신설, 폐지, 명칭변경 또는 모집단위내의 학과(전공) 폐지, 신설 등에도 불구하고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학과(부) 또는 전공에 재적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학적변동자와 당해 입학년도에 한 학기라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청에 따라 변경된 학과(부) 또는 전공에 재적한 것으로 한다.

② 학부로 모집하여 전공이 배정되지 않은 학생은 종전 기준에 따라 전공을 배정한다.

③ <별표1>, <별표2>의 2013학년도 모집단위 및 학생정원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학점 및 학년수료) 제62조 및 제63조는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양이수 및 학기당 수강학점)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교양교과목을 최소36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은 18학점내지 21학점으로 한다.

제3조(모집단위 신설, 폐지, 분리,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①학과(부) 신설, 폐지, 명칭변경 등에도 불구하고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학과(부) 또는 전공에 재적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학적변동자와 당해 입학년도에 한 학기라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청에 따라 변경된 학과(부) 또는 전공에 재적한 것으로 한다.

② 학부로 모집하여 전공이 배정되지 않은 학생은 종전 기준에 따라 전공을 배정한다.

③ <별표1>, <별표2>의 2014학년도 모집단위 및 학생정원은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폐지,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①2015학년도 모집단위의 폐지 및 명칭변경 등에 따라 2015학년도 이전 모집단위의 학부(과)에 재적중인 자와 재입학하는 자는 변경된 모집단위로 소속변경을 한다.

② 2014학년도 모집단위에 따라 2014학년도 이전 모집단위에 재적중인 자와 재입학한 자는 변경된 모집단위에 재적한 것으로 본다.

③ <별표1>, <별표2>의 2015학년도 모집단위 및 학생정원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3조 단서는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국외대학과 협약에 의한 경우에는 2014.2.11.이후 협약의 갱신 및 신규협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신설, 폐지, 통합,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①학과 신설, 폐지, 통합, 명칭변경 등에도 불구하고 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학과(부) 또는 전공에 재적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학적변동자와 당해 입학년도에 한 학기라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청에 따라 변경된 학과에 재적한 것으로 한다.

③ <별표1>, <별표2>의 2016학년도 모집단위 및 학생정원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④ <별표4>, <별표4-2>의 학위종별은 2016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4-2>의 사회복지상담학과, 복지상담학과, 경찰행정학과, 소방행정학과 학위는 2014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학원 모집 학과 및 학위종별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모집단위 신설, 폐지, 통합,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①학과 신설, 폐지, 통합, 명칭변경 등에도 불구하고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학과(부) 또는 전공에 재적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학적변동자와 당해 입학년도에 한 학기라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청에 따라 변경된 학과에 재적한 것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18조(학생정원)제1항 <별표 1>및 제2항<별표 2> 학생 정원표는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모집단위 폐지, 전공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모집단위 폐지, 전공명칭변경 등에도 불구하고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학과(부) 또는 전공에 재적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05월 21일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18조(학생정원)제1항 <별표 1>및 제2항 <별표 2> 학생 정원표는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모집단위 폐지, 전공명칭변경 등에도 불구하고 201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학과(부) 또는 전공에 재적한 것으로 본다.

② 제79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유학생의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3. 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 제31조, 제51조, 제52조의 개정 규정은 201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별표1, 별표4-2는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모집단위 및 학과 명칭 변경·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① 모집단위 및 학과(부)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

경 이전의 모집단위 및 학과(부)는 해당 입학년도 입학생이 학적 변동 없이 졸업하는 학년도까지 존속한다.
② 이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 또는 제적되었다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모집단위 및 학과(부) 명칭 변경으로 해당 모집단위 및 학과(부)가 없을 때에는 명칭이 변경된 모집단위 및 학과(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모집단위 및 학과(부) 존속 기한 만료 시 해당 모집단위 및 학과(부)에 재학 중인 학생은 명칭이 변경된 모집단위 및 학과(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④ 모집단위 및 학과(부)가 폐지된 경우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종전의 학과(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학부 신설 및 모집단위 명칭 변경에 따른 교원 소속) ① 학부가 신설되고 모집단위 및 학과(부) 명칭이 변경된 경우, 교원은 명칭이 변경된 학부와 학과에 소속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9. 4. 2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8.0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81조의 개정규정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01.13.)

제1조(시행일)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이 학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79조 단서규정의 개정사항은 2018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04.20.)

제1조(시행일)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0.03.01.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제50조 제1항 제4호 및 제53조의2는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1.1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4.2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9.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2.0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명칭 변경·예비폐과에 따른 학생 소속) ① 모집단위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이전의 모집단위는 해당 입학년도 입학생이 학적 변동 없이 졸업하는 학년도까지 존속한다.

② 이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 또는 제적되었다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모집단위 명칭변경으로 해당 모집단위가 없을 때에는 명칭이 변경된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모집단위 존속 기한 만료 시 해당 모집단위에 재학 중인 학생은 명칭이 변경된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④ 학부 명칭변경 또는 학부 신설 등으로 모집단위 소속학부가 변경된 경우 해당 모집단위에 재적중인 학생은 변경된 학부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제3조(모집단위 명칭변경에 따른 교원 소속) 모집단위 명칭이 변경된 경우 교원은 명칭이 변경된 학부와 모집단위에 소속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모집단위 명칭 변경·예비폐과에 따른 학생 소속) ① 모집단위의 명칭 변경 또는 예비 폐과된 경우 이전의 모집단위는 해당 입학년도 입학생이 학적 변동 없이 졸업하는 학년도까지 존속한다.

② 이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 또는 제적되었다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모집단위 명칭변경으로 해당 모집단위가 없을 때에는 명칭이 변경된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모집단위 존속 기한 만료 시 해당 모집단위에 재학 중인 학생은 명칭이 변경된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④ 학부 명칭변경 또는 학부 신설 등으로 모집단위 소속학부가 변경된 경우 해당 모집단위에 재적중인 학생은 변경된 학부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제3조(모집단위 명칭변경에 따른 교원 소속) 모집단위 명칭이 변경된 경우 교원은 명칭이 변경된 학부와 모집단위에 소속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융합학과 중 2022학년도 설치학과는 2022.8.1.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7.2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4.0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07.31.)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22.05.02. 2023.03.01. 2023.04.24. 2023.07.25. 2024.04.01.>

대학 학부 모집단위별 학생 정원표

캠퍼스	모집단위	전공	입학정원					비고	
			2025	2024	2023	2022	2021		
영암	기술교육과		20	20	20	20	20		
	특수교육과		20	20	20	30	30		
	유아교육과		20	20	20	35	35		
	글로벌복지한국어학과		20	20	-	-	-		
	간호학과		128	128	108	80	80		
	물리치료학과		60	60	60	50	50		
	스포츠융합복지학부	체육학전공 스포츠재활전공 태권도전공 사회복지상담전공 평생교육전공 복지경영전공 빅데이터복지전공 디지털경영전공	135	-	-	-	-	학부신설	
	창업평생교육학과		-	20	-	-	-	예비폐과	
	사회복지빅데이터학과		-	20	-	-	-	예비폐과	
	디지털보건재활학과		-	20	-	-	-	예비폐과	
	휴먼서비스학과	사회복지상담전공 경영학전공	-	-	-	30	30		
	휴먼서비스학과		-	25	60	-	-	예비폐과	
	스포츠건강관리학과		-	45	45	55	55	예비폐과	
	태권도학과		-	30	30	35	35	예비폐과	
	산학융 합학부	조선산업융합학과		-	-	-	-	-	정원외 외국인 전담 학부·학과 신설
		경영학과		-	-	-	-	-	
		K-뷰티산업학과		-	-	-	-	-	
		간호재활보건학과		-	-	-	-	-	
		농수산식품학과		-	-	-	-	-	
	영암캠퍼스 계			403	428	363	335	335	

캠퍼스	모집단위	전공	입학정원					비고	
			2025	2024	2023	2022	2021		
당진	항공서비스학과		30	40	50	77	77	정원감원 -10	
	항공운항학과		30	30	30	30	30		
	항공정비학과		48	48	48	60	60		
	전통연희학과		20	20	20	20	20		
	AI융합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인공지능빅데이터전공 시각영상디자인전공 웹툰애니메이션전공 게임콘텐츠전공 데이터경영복지전공	100	-	-	-	-	학부신설	
	사회문화복지학부	관광레저전공 경찰행정학전공 반려동물전공 사회복지전공 청소년상담전공 평생학습전공 부동산학전공 글로벌한국어교육전공	186	-	-	-	-	학부신설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과		-	-	-	-	20		
	인공지능빅데이터학과		-	20	10	20	-	예비폐과	
	AI콘텐츠디자인학과		-	30	35	-	-	예비폐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	-	-	55	55		
	웹툰애니메이션학과		-	50	50	-	-	예비폐과	
	경찰행정학과		-	30	30	30	30	예비폐과	
	스포츠레저산업학과		-	30	40	40	40	예비폐과	
	사회복지상담학과		-	35	60	-	-	예비폐과	
	반려동물관리학과		-	20	20	-	-	예비폐과	
	자유전공학과		-	36	61	-	-	예비폐과	
	항공물류학과		-	-	-	25	25		
	항공교통관리학과		-	-	-	25	25		
	소방행정학과		-	-	-	20	20		
	실용음악학과		-	-	-	40	40		
	디자인학과		-	-	-	40	40		
	산학융합학부	기계산업융합학과		-	-	-	-	정원의외국인 전담대학 ·학과 신설	
	운화국제대학	글로벌항공서비스학과		-	-	-	-		
		글로벌항공운항학과		-	-	-	-		
		글로벌항공정비학과		-	-	-	-		
		글로벌항공기제조공정학과		-	-	-	-		
	당진캠퍼스 계			414	389	454	482	482	
	편제정원 합계 (3,268명)			817	817	817	817	817	

※ 산학융합학부와 운화국제대학의 각 학과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의외국인 전담학과임

1. 2011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내용

가. 모집단위 명칭 변경

- 1) 경영정보학과 → 경영학과
- 2) 인문사회대학(복지상담학과, 소방행정학과, 아동영어학과) → 복지상담학과
- 3) 관광외국어학부 → 관광외국어학과

나. 학부(과) 내의 전공명칭 변경 및 폐지

- 1) 경찰학부내의 수사정보학전공 → 경찰수사학전공
- 2) 경찰학부내의 사이버경찰학전공을 폐지

다. 모집단위 분리

- 1) 음악뮤지컬학과를 음악학과와 뮤지컬학과로 분리함

라. 모집단위 통합

- 1) 생활체육학과, 태권도학과, 골프경영학과, 해양레저스포츠학과, 경호·무도학부(경호학전공, 무도학전공, 특공무술전공)를 레저·체육학부(생활체육학전공, 태권도학전공, 골프경영학전공, 바둑학전공, 레저스포츠학전공, 경호무도비서학전공)로 통합 함

마. 모집단위를 신설하고 기존의 학과를 전공으로 변경하여 소속시킴

- 1) 레저산업학부(레저정보산업학전공)를 신설하고 해양레저선박학과를 해양레저선박학전공으로 변경하여 신설학부에 소속시킴

2. 2012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내용

가. 모집단위 신설

- 1)해양레저학과

나. 모집단위 변경

- 1) 관광외국어학과 → 관광외국어학부(관광영어전공, 관광일본어전공)
- 2) 디자인학과 → 디자인학부(디자인전공, 인테리어디자인전공)
- 3) 레저·체육학부(생활체육학전공, 태권도학전공, 골프경영학전공, 바둑학전공, 레저스포츠학전공, 경호무도비서학전공) → 체육학부(생활체육학전공, 태권도학전공, 골프경영학전공, 바둑학전공, 경호무도비서학전공)로 모집단위를 변경하고 레저스포츠학전공을 폐지함

다. 모집단위 폐지

- 1) 레저산업학부(해양레저선박학전공, 레저정보산업학전공)을 폐지함

라. 모집단위내의 학과 또는 전공 폐지

- 1)한중교류대학(국제한국어교육학과, 관광한국어학과, 관광중국어학과, 음악학과, 컴퓨터응용기술학과, 관광영어학과, 경영한국어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실용음악학과, 인테리어디자인학과, 제품디자인학과)의 모집단위내의 학과 중 실용음악학과, 음악학과, 컴퓨터응용기술학과, 시각디자인학과, 관광영어학과, 인테리어디자인학과, 제품디자인학과를 폐지함

3. 2013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내용

가. 모집단위 신설

- 1)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나. 모집단위 변경 및 전공폐지

- 1) 관광외국어학부(관광영어전공, 관광일본어전공) → 관광외국어학과로 모집단위를 변경하고 관광영어전공, 관광일본어전공을 폐지함
- 2) 경찰학부(경찰행정학전공, 경찰수사학전공) → 경찰행정학과로 모집단위를 변경하고 경찰수사학전공을 폐지함
- 3) 실용음악학부(실용음악전공) → 실용음악학과로 모집단위를 변경함
- 4) 디자인학부(디자인전공, 인테리어디자인전공) → 디자인학과로 모집단위를 변경하고 인테리어디자인전공을 폐지함

다. 모집단위 통합

- 1) 사회복지학과, 복지상담학과 → 사회복지상담학과로 모집단위를 통합함

라. 모집단위 분리

- 1) 체육학부(생활체육학전공, 태권도학전공, 골프경영학전공, 바둑학전공, 경호무도비서학전공) → 체육학부(생활체육학전공, 태권도학전공, 바둑학전공), 경호무도비서학과, 골프경영학과로 모집단위를 분리함
- 2) 한중교류대학(국제한국어교육학과, 관광한국어학과, 관광중국어학과, 경영한국어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 한중아세안대학 인문사회계열(국제한국어교육학과, 관광한국어학과, 관광중국어학과, 국제비서학과, 사무자동화학과), 한중아세안대학 예능계열(국제실용음악학과, 예술경영학과, 뷰티미용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제과제빵학과, 매스미디어예술학과)로 모집단위를 변경분리 하고 모집단위내의 국제비서학과, 사무자동화학과, 국제실용음악학과, 뷰티미용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제과제빵학과, 매스미디어예술학과를 신설하고 경영한국어학과를 예술경영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만화애니메이션학과를 폐지함

4. 2014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내용

가. 모집단위 신설

- 1) 교정보호학과, 정보물류학과, 해양레저장비학과, 방송영화학과

나. 모집단위 변경 및 전공폐지

- 1) 관광외국어학과 → 아동보육상담학과로 모집단위를 변경함
- 2) 한중아세안대학 인문사회계열(국제한국어교육학과, 관광한국어학과, 관광중국어학과, 국제비서학과, 사무자동화학과) → 중국학과로 모집단위를 변경하고 한중아세안대학 인문사회계열학과중 국제한국어교육학과, 관광한국어학과, 국제비서학과, 사무자동화학과를 폐지함

다. 모집단위 폐지

- 1) 한중아세안대학 예능계열(국제실용음악학과, 예술경영학과, 뷰티미용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제과제빵학과)를 폐지함

라. 모집단위 분리

- 1) 체육학부(생활체육학전공, 태권도학전공, 바둑학전공) → 생활체육학과, 태권도학과로 모집단위를 분리하고 체육학부(바둑학전공)은 생활체육학과로 통합함

5. 2015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내용

가. 모집단위 신설

- 1) 항공서비스학과

나. 모집단위 명칭 변경

- 1) 중국학과 → 글로벌비즈니스학과로 모집단위를 변경함
- 2) 조형문화과 → 공간문화컨텐츠학과로 모집단위를 변경함

다. 모집단위 폐지

- 1) 아동보육상담학과, 안경광학과, 컴퓨터교육과, 음악학과

라. 모집단위 통합

- 1) 경호무도비서학과, 골프경영학과 → 생활체육학과로 모집단위를 통합함

6. 2016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내용

가. 모집단위 신설

- 1) 융합보안학과, 방재안전학과

나. 모집단위 명칭 변경

- 1) 경영학과 → 복지경영학과로 모집단위를 변경함

다. 모집단위 통합

- 1) 해양레저장비학과, 해양레저학과 → 해양레저학과로 모집단위를 통합함

7. 2017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내용

가. 모집단위 신설

- 1) 항공교통물류학과,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 피아노학과

나. 모집단위 통합

- 1) 교정보호학과, 경찰행정학과 → 경찰행정학과로 모집단위를 통합함
- 2) 실용음악학과, 뮤지컬학과, 방송영화학과 → 실용음악학부(보컬전공, 기악(연주)전공, 작곡전공, 뮤지컬(방송연기)전공)로 모집단위를 통합함
- 3) 복지경영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과 → 경영학부(경영학전공, 경영한국어전공)로 모집 단위를 통합하고 전공을 신설함

다. 모집단위 폐지

- 1) 융합보안학과, 방재안전학과, 정보물류학과, 공간문화컨텐츠학과

8. 2018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내용

가. 모집단위 폐지

- 1)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나. 모집단위내 전공명칭 변경

- 1) 실용음악학부(보컬전공, 기악(연주)전공, 작곡전공, 뮤지컬(방송연기)전공) → 실용음악학부(보컬전공, 기악전공, 작곡전공, 뮤지컬방송연기전공)으로 모집단위내의 전공명칭을 변경함

9. 2019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내용

가. 모집단위 신설

- 1) 항공ICT융합학과

나. 모집단위내 명칭 변경

- 1) 언어치료청각학과 → 언어치료학과로 모집단위내 명칭을 변경함.
- 2) 실용음악학부(보컬전공,기악전공,작곡전공,뮤지컬방송연기전공) → 실용음악학과로 모집단위내 명칭을 변경함.

다. 모집단위 통합

- 1) 사회복지상담학과, 경영학부 → 휴먼서비스융합학부(사회복지상담학 전공, 경영학 전공)으로 모집 단위를 통합하고 전공을 신설함.

10. 2020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내용

가. 모집단위 신설

- 1) 항공해양물류학과, 스포츠레저산업학과

나. 모집단위내 명칭 변경

- 1) 항공ICT융합학과 → 항공교통관리학과로 모집단위내 명칭을 변경함.
- 2) 휴먼서비스융합학부(사회복지상담전공, 경영학 전공)→ 휴먼서비스융합학과(사회복지상담전공, 경영학 전공)로 모집단위내 명칭을 변경함.
- 3) 생활체육학과→스포츠건강관리학과

다. 모집단위 폐지

- 1) 언어치료학과, 항공교통물류학과, 피아노학과, 해양레저학과

11. 2021학년도 대학학생정원 조정 내용

가. 모집단위 폐지

- 1) 작업치료학과

나. 학부 및 모집단위 신설

- 1) IT학부,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과(20명)

다. 정원 감축

- 1) 97명 감축(2020학년도 914명→ 817명)

라. 모집단위 명칭변경

- 1) 항공해양물류학과→항공물류학과
- 2) 휴먼서비스융합학과→휴먼서비스학과

12. 2022학년도 대학학생정원 조정 내용

가. 모집단위 명칭변경

- 1)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과→인공지능빅데이터학과

13. 2023학년도 대학학생정원 조정 내용

가. 모집단위 간 정원 조정

- 1) 유아교육과 감원 5명
- 2) 휴먼서비스학과 증원 30명
- 3) 태권도학과 감원 5명
- 4) 항공서비스학과 감원 27명
- 5) 항공정비학과 감원 12명
- 6) 경찰행정학과 증원 10명

나. 학부신설 : 안전힐링학부

다. 모집단위 신설

- 1) AI콘텐츠디자인학과(35명), 사회복지상담학과(59명), 반려동물관리학과(40명)

라. 학부명칭변경

- 2) IT학부→ IT조형학부

마. 모집단위 명칭변경

- 1) 항공교통관리학과 → 항공교통드문학과
- 2) 만화애니메이션학과 → 웹툰애니메이션학과

바. 학부소속 변경

- 1) 경찰안전학부→안전힐링학부(스포츠레저산업학과, 경찰행정학과)
- 2) 예술학부→안전힐링학부(전통연희학과)
- 3) 예술학부→ IT조형학부(만화애니메이션학과(웹툰애니메이션학과))

사. 예비폐과

- 1) 항공물류학과, 소방행정학과, 실용음악학과, 디자인학과

아. 휴먼서비스학과 전공폐지(사회복지상담학전공, 경영학전공), 모집단위가 아닌 융합학과(글로벌경영학과) 신설

14. 2023학년도 대학학생정원 조정 내용(보건계열 정원배정 관련 2차 조정)

가. 모집단위 간 정원 조정

- 1) 특수교육과 감원 10명, 유아교육과 감원 10명
- 2) 간호학과 증원 28명, 물리치료학과 증원 10명,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감원 10명
- 3) 인공지능빅데이터학과 감원 10명, 웹툰애니메이션학과 감원 5명
- 4) 경찰행정학과 감원 10명, 사회복지상담학과 증원 1명, 반려동물관리학과 감원 20명

나. 학부 신설 및 명칭변경

- 1) 학부신설 : 자유전공학부
- 2) 명칭변경 : 안전힐링학부→레저힐링학부

다. 모집단위 신설

- 1) 자유전공학과(61명)

라. 예비폐과

- 1) 항공교통드론학과(항공교통관리학과)

15. 2024학년도 대학학생정원 조정 내용(간호학과 정원배정)

가. 2024학년도 보건의료분야 학생정원 배정(간호학과 20명)에 따른 학과 간 조정

- 1) 간호학과 20명 증원
- 2) 휴먼서비스학과 10명 감원, 자유전공학과 10명 감원

16. 2025학년도 대학학생정원조정 내용

가. 모집단위 간 정원조정

- 1)항공서비스학과 감원 10명

나. 모집단위신설

- 1) 스포츠융합복지학부 135명
 - 체육학전공, 스포츠재활전공, 태권도전공, 사회복지상담전공, 평생교육전공, 복지경영전공, 빅데이터복지전공, 디지털경영전공
- 2) AI융합학부 100명
 - 컴퓨터공학전공, 인공지능빅데이터전공, 시각영상디자인전공, 웹툰애니메이션전공, 게임콘텐츠전공, 데이터경영복지전공
- 3) 사회문화복지학부 186명
 - 관광레저전공, 경찰행정학전공, 반려동물전공, 사회복지전공, 청소년상담전공, 평생학습전공, 부동산학전공, 글로벌한국어교육전공

다. 외국인 유학생 정원의 전담 모집단위 신설

- 운화국제대학(글로벌항공서비스학과, 글로벌항공운항학과, 글로벌항공정비학과, 글로벌항공기제조공정학과
- 산학융합학부(조선산업융합학과, 기계산업융합학과, 경영학과, K-뷰티융합학과, 간호재활학과, 농수산식품학과

라. 모집단위 폐지(예비폐과)

- 창업평생교육학과, 사회복지빅데이터학과, 디지털보건재활학과, 휴먼서비스학과, 스포츠건강관리학과, 태권도학과
- 인공지능빅데이터학과, AI콘텐츠디자인학과, 웹툰애니메이션학과, 경찰행정학과, 스포츠레저산업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반려동물관리학과, 자유전공학과

마. 대학·학부 폐지

- 글로벌 디지털 융합대학, 교육학부, 건강보건학부, 항공학부, 경찰안전학부, IT조형학부, 예술학부, 레저힐링학부, 자유전공학부

대학에 설치하는 캠퍼스별 대학·학부·학과(전공)

(제4조제4항 관련)

<모집단위>

캠퍼스	모집단위		개설전공	비고
영암	-기술교육과, 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글로벌복지한국어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	
	-스포츠융합복지학부		체육학전공 스포츠재활전공 태권도전공 사회복지상담전공 평생교육전공 복지경영전공 빅데이터복지전공 디지털경영전공	
	-산학융합학부	조선산업융합학과 경영학과 K-뷰티산업학과 간호재활보건학과 농수산식품학과		정원의 외국인유학생전담학부·학과
당진	-항공서비스학과,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 전통연희학과		-	
	-AI융합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인공지능빅데이터전공 시각영상디자인전공 웹툰애니메이션전공 게임콘텐츠전공 데이터경영복지전공	
	-사회문화복지학부		관광레저전공 경찰행정학전공 반려동물전공 사회복지전공 청소년상담전공 평생학습전공 부동산학전공 글로벌한국어교육전공	
	산학융합학부	기계산업융합학과		정원의 외국인유학생전담대학·학과
	운화국제대학	-글로벌항공서비스학과, 글로벌항공운항학과, 글로벌항공정비학과, 글로벌항공기제조공정학과	-	
13개 모집단위(학부 3,개 학과 10개) (정원의 외국인유학생전담 모집단위 제외)			전공 22개	

※ 2025학년도 이전에 학생모집이 중지되었거나 폐지된 학과 또는 학과 명칭이 변경된 학과 중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과는 학생이 존속할 때까지 유지하지만 위 표에는 표기하지 않았음

※ 2025학년도 모집단위를 기준으로 대학학부·학과를 표기하였으며, 13개 모집단위 총 수에 외국인 유학생 전담모집단위는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융합학과>

설치 학년도					
2020		2022		2023	
학과명	정원	학과명	정원	학과명	정원
스포츠재활학과	20	골프산업경영학과(폐지)	20	글로벌경영학과	20
-		조선산업정비학과	20	메타버스콘텐츠학과	20
-		-		관광해양레저학과	40
				K-POP융합학과	40

※ 2024학년도에 골프산업경영학과 폐지됨.

<별표2> <개정2022.07.06.> <2023.03.01.>, <개정2023.04.24.>

일반 대학원 학과(전공) 및 학생 정원표 <개정2020.01.13. 2020.04.20.>

과 정	계 열 (학 과) 별	입학정원			
		2023	2022	2021	2020
석사학위 과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 사회계열 : 경찰행정학과, 소방행정학과, 한국어학과, 경영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과, 항공서비스학과 ● 예체능 계열 : 산업디자인학과, 음악학과, 미술학과, 레저스포츠학과, 실용음악학과, 체육학과 ● 공학 계열 : 항공정비학과 ● 자연 계열 : 간호학과, 언어치료청각학과, 물리치료학과, 인공지능산업학과 	40	40	40	40
소 계	(19개학과)	40	40	40	40
박사학위 과 정 및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 사회계열 : 경영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항공경영학과 ● 자연계열 :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10	10	10	10
소 계	7개학과	10	10	10	10
합 계	26개학과	50	50	50	50

1. 2011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생정원 조정내용

가. 학과 신설

- (1) 석사과정 : 물리치료학과, 경영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 (2) 박사과정 : 물리치료학과

나. 정원증원

- (1) 석사과정 입학정원 30명을 40명으로 증원 함

2. 2014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생정원 조정내용

가. 학과 신설

- (1) 석사과정 : 실용음악학과

3. 2016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생정원 조정내용

가. 학과 신설

- (1) 석사과정 : 항공운항/서비스학과
- (2) 박사과정 : 항공운항/서비스학과

4. 2019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생정원 조정 내용

- (1) 박사과정 : 간호학과 신설

5. 2020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생정원조정

가. 학과폐지

- (1) 석사과정 : 컴퓨터공학과, 안경광학과
- (2) 박사과정 : 컴퓨터공학과, 안경광학과

6. 2022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생정원조정

- (1) 석사과정 : 유아교육과

7. 2023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생정원조정

- (1) 석사과정 학과신설 : 항공서비스학과, 체육학과, 항공정비학과, 인공지능산업학과
(2) 석사과정 학과폐지 : 항공운항/서비스학과
(3) 박사과정 및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학과 폐지·신설 : 항공운항/서비스학과(폐지), 항공경영학과(신설)

<별표2-1><개정2022.07.06.>,<2023.03.01.>,<개정2023.04.24>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제4조제4항 관련)

과 정	계 열 별	학 과
석사학위 과 정	인문 사회	경찰행정학과, 소방행정학과, 한국어학과, 경영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항공서비스학과, 유아교육과
	예체능	산업디자인학과, 음악학과, 미술학과, 레저스포츠학과, 실용음악학과, 체육학과
	공학	항공정비학과
	자연	간호학과, 언어치료청각학과, 물리치료학과, 인공지능산업학과
소 계		19개학과
박사학위 과정 및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인문 사회	경영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항공경영학과
	자연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소 계		7개학과
합 계		26개학과

〈별표3〉삭제(2014.03.17.)

<별표4> <개정2022.07.06.>, <개정2023.04.24.>

대 학 원 학 위 종 별

1. 일반대학원

과 정	학 위 종 별	학 과(전공)
석 사	문 학 석 사	한국어학과
	경 찰 학 석 사	경찰행정학과
	소 방 행 정 학 석 사	소방행정학과
	항 공 정 비 학 석 사	항공정비학과(신설)
	미 술 학 석 사	산업디자인학과, 미술학과
	간 호 학 석 사	간호학과
	이 학 석 사	언어치료청각학과, 레저스포츠학과, 인공지능산업학과
	음 악 석 사	음악학과
	실 용 음 악 석 사	실용음악학과
	물 리 치 료 학 석 사	물리치료학과
	경 영 학 석 사	경영학과
	사 회 복 지 학 석 사	사회복지학과
	교 육 학 석 사	교육학, 유아교육과
	항 공 서 비 스 학 석 사	항공서비스학과
	체 육 학 석 사	체육학과
박 사	경 영 학 박 사	경영학과
	경 찰 학 박 사	경찰행정학과
	사 회 복 지 학 박 사	사회복지학과
	교 육 학 박 사	교육학과
	물 리 치 료 학 박 사	물리치료학과
	항 공 경 영 학 박 사	(항공경영학과)
	간 호 학 박 사	간호학과

- 1) 2011학년도부터 사회복지학과 학위를 문학박사에서 사회복지학박사로 변경함
- 2) 2011학년도부터 경영학석사, 사회복지학석사, 교육학석사 학위를 신설함
- 3) 2014학년도부터 실용음악석사 학위를 신설함
- 4) 2016학년도부터 경찰행정학과 학위를 행정학 석사, 행정학 박사에서 경찰학 석사, 경찰학 박사로 변경하고 소방행정학과 학위를 행정학 석사에서 소방행정학 석사로 변경함
- 5) 2016학년도부터 항공서비스학석사 및 항공서비스학박사 학위를 신설함
- 6) 2019학년도부터 간호학 박사 학위를 신설함
- 7) 2020학년도부터 석사과정의 공학석사와 컴퓨터공학과, 안경광학과를 삭제하고, 박사학위과정의 공학박사와 컴퓨터공학과, 이학박사와 안경광학과를 삭제함
- 8) 2022학년도부터 유아교육과 석사학위를 신설함
- 9) 2023학년도부터 학위종별에 체육학석사학위를 신설하고, 석사학위과정으로 체육학과, 인공지능산업학과를 신설함
- 10) 2023학년도부터 학위종별에 항공정비학 석사와 체육학석사를 신설하고, 박사과정에 항공서비스학 박사를 폐지하고 항공경영학박사를 신설함

<별표 4-2> <개정 2022.08.22. 2023.03.01., 2024.04.01.>

학 사 학 위 종 별(제64조제2항 관련)

학위종별	학과(전공)
문학사	영어교육과, 중국학과, 방송영화학과, 관광외국어학과
아동보육학사	아동보육상담학과
경영학사	경영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경영학전공
	휴먼서비스융합학부(경영학전공), 휴먼서비스융합학과(경영학전공), 휴먼서비스학과(경영학전공), 융합학과(골프산업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휴먼서비스학과
	항공해양물류학과, 항공물류학과
항공경영학사	항공교통관리학과, 항공교통드론학과
항공ICT융합학사	항공ICT융합학과
복지경영학사	복지경영학과
사회복지학사	휴먼서비스융합학부(사회복지상담 전공), 휴먼서비스융합학과(사회복지상담 전공), 휴먼서비스학과(사회복지상담 전공), 사회복지빅데이터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사회복지상담전공
경찰학사	경찰행정학과
소방학사	소방행정학과
행정학사	교정보호학과
음악학사	실용음악학과, 음악학과, 뮤지컬학과, 피아노학과
	보컬전공, 작곡전공, 기악(연주)전공, 뮤지컬(방송연기)전공
한국음악학사	전통연희학과
미술학사	디자인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웹툰애니메이션학과, AI콘텐츠디자인학과
	조형문화과, 공간문화콘텐츠학과
체육학사	태권도학과,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생활체육학과, 해양레저학과, 골프경영학과, 경호무도비서학과
	스포츠레저산업학과
	융합전공(스포츠재활학과)
물리치료학사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사	작업치료학과
간호학사	간호학과
공학사	항공정비학과, 항공운항학과, 항공교통물류학과, 융합학과(조선산업정비학과, 메타버스콘텐츠학과), 글로벌항공운항학과, 글로벌항공정비학과, 글로벌항공기제조공정학과, 인공지능빅데이터학과
보건학사	언어치료정각학과, 언어치료학과, 안경광학과
	융합전공(스포츠재활학과)
항공서비스학사	항공서비스학과, 글로벌항공서비스학과
정보물류학사	정보물류학과
이학사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과,
	반려동물관리학과,
교육학사	기술교육과, 컴퓨터교육과, 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수학교육과, 창업평생교육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사	글로벌복지한국어학과
스포츠보건재활학사	디지털보건재활학과
K-POP연예학사	융합학과(K-POP융합학과)
관광해양복지학사	융합학과(관광해양레저학과)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20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아래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전 공 : 학과(전공)

학위명: 학사

복수전공 : 학과(전공)

학위명: 학사

부 전 공 : 학과(전공)

20 년 월 일

세 한 대 학 교 총 장 (학위) ○ ○ ○ <직인>

학위번호 : 세한대○○○○(학)○○○○

(별지 제2호 서식)

석제 호

학 위 기

성 명 :

20 년 월 일 생

학과(전공) :

위 사람은 이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였으므로 이에 ○○○학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논 문 :

20 년 월 일

세한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 ○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학위를 수여함.

세한대학교 총장 ○○○박사 ○ ○ ○ <직인>

학위번호 : 세한대○○○○(석)○○○○

(별지 제3호 서식)

박제 호

학 위 기

성 명 :

20 년 월 일 생

학과(전공) :

위 사람은 이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였으므로 이에 ○○○학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논 문 :

20 년 월 일

세한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 ○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박사학위를 수여함.

세한대학교 총장 ○○○박사 ○ ○ ○ <직인>

학위번호 : 세한대○○○○(박)○○○○

(별지 제4호 서식)

명박제 호

학 위 기

성 명 :

20 년 월 일 생

위 사람은 국가문화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공헌하였으므로 본 대학교 총장은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세한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 ○ ○ <직인>

세한대학교 총장 ○○○박사 ○ ○ ○ <직인>

학위번호 : 세한대○○○○(명박)○○○○

(별지 제5호 서식)

○○○원

제 호

증 서

성 명 :

20 년 월 일 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 ○○○대학원 ○○○분야에 관한 소정의 연구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세한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 ○ ○ <직인>

세한대학교 총장 ○○○박사 ○ ○ ○ <직인>

(별지 제6호 서식)

○○○원
제 호

수료증서

성 명 :

20 년 월 일 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부설) ○○○대학원(○○교육원) ○○과정(○학점)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세한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 ○ ○ <직인>

세한대학교 부설○○교육원 원 장 ○ ○ ○ <직인>

세한대학교 총장 ○○○박사 ○ ○ ○ <직인>